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5호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제한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공회전 제한 및 적용예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단속공무원 및 공회전 단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사.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아.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1조 등).

3. 의견제출

가.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042-600-5327,
FAX 042-600-5039, E-mail : kimcs461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한장소 지정) ①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차고지. 이 경우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 운송업체에 한한다.
3.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및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 주차장
다. 박물관·미술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라. 주요경기장 등(한밭종합운동장, 대전월드컵경기장 등)의 주차장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전광역시 공보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제한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 제한) ①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5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의 공회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단속공무원) ①시장은 환경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 단속) ①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

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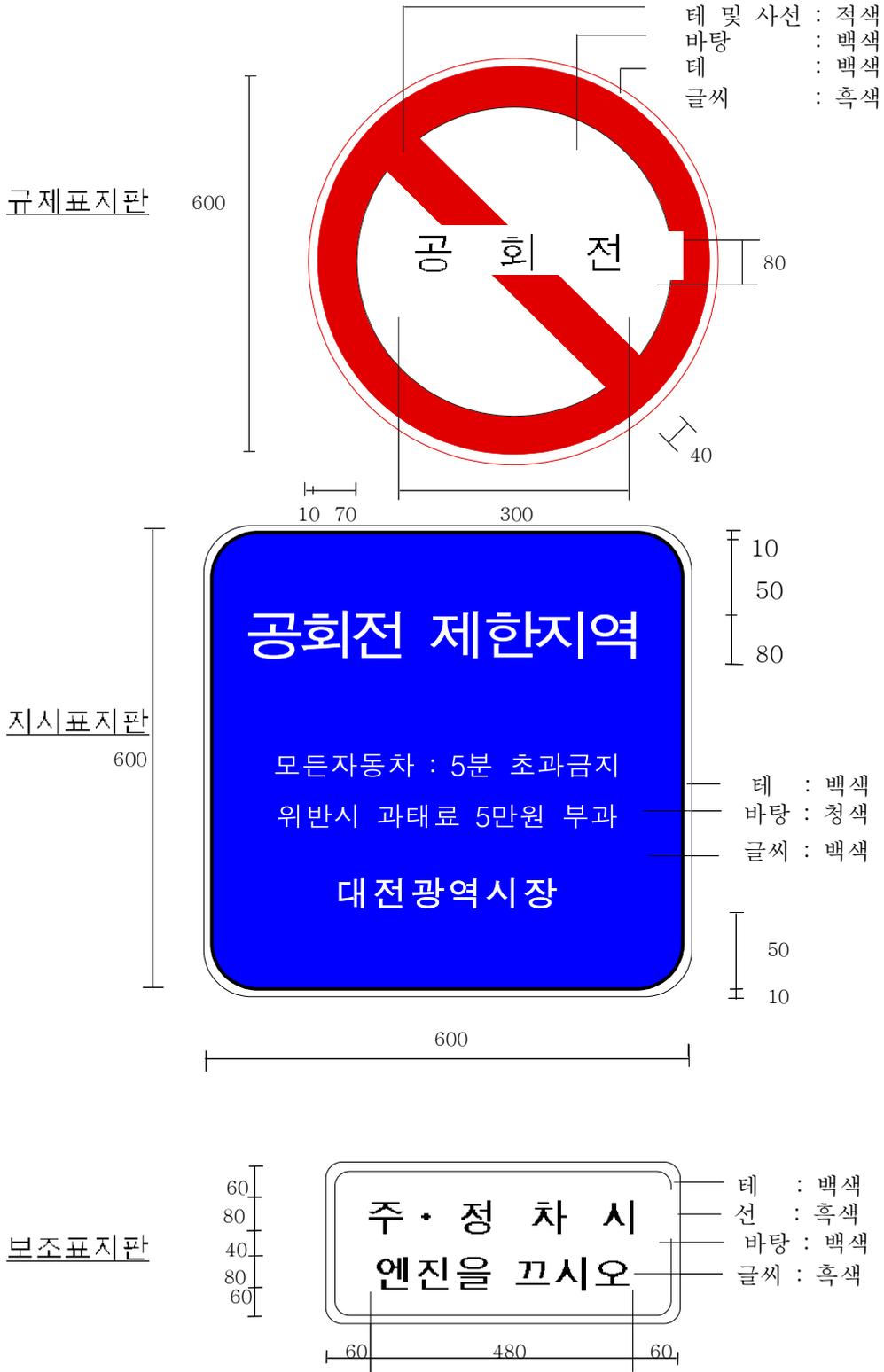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장소의 지정 등
2. 제6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관리 및 감독
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4.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 공회전규제 표지판(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No.

확 인 서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운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가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 장소 안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제4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

기상조건	기온	()℃	공회전 내용	시작	년 월 일, 시 분
	날씨	맑음, 흐림, 비		종료	년 월 일, 시 분
위반내용	사용연료	휘발유, 가스, 경유	공회전 제한시간		()분
	공회전 시간	()분	초과시간		()분

운 전 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단속공무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서

(운전자 교부용)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운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가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 장소 안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제4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

기상조건	기온	()℃	공회전 내용	시작	년 월 일, 시 분
	날씨	맑음, 흐림, 비		종료	년 월 일, 시 분
위반내용	사용연료	휘발유, 가스, 경유		공회전 제한시간	
	공회전 시간	()분		초과시간	
					()분

운 전 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단속공무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No.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제4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구청 ○○○과에 오시거나, 서면(우편·FAX : 전화번호,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을 필히 기재)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위반이 됩니다.

<단속 결과>

자동차등록번호				기 온	()℃
위 반 장 소					
위반내용	공회전 시작	년	월	일	시 분
	공회전 종료	년	월	일	시 분
단 속 공 무 원		소속 :		성명 :	

(○○○과 : ○○구 ○○동 ○○번지, 전화○○○-○○○○, FAX : ○○○-○○○○)

년 월 일

자동차 운전자(소유자) 귀하

대전광역시장

관계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①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제94조 (과태료)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8.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합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합시정 현황과 부품결합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10의2.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1.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지키지 아니한 자
 12. 삭제 <2012.2.1>
 13.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2.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 ⑤ 삭제 <2008.12.31>
- ⑥ 삭제 <2008.12.3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노면)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주차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